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91 발의연월일: 2022. 9. 2.

발 의 자:이태규・권성동・金炳旭

김승수 · 노용호 · 류성걸

서병수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정경희 · 조경태

조해진 • 하영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총액의 2 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유·초·중등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국세 수입 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어 유·초·중등교육 운영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대학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삭제하고 이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 부문 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 ㆍ 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법안」(의안번호 제171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교부금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로 한다.
-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제1호에서"를 "제3조제2항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내국세나 교육세의"를 "내국세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내국세나 교육세가"를 "내국세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세 및 교육세의"를 "내국세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颜

개 정 아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략)
 -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
 -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 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 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 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 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제5 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 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 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 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 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

- (혂행과 같음)
-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 ② 교부금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 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 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 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 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 총액의 1만분의 2.079로 한 다.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로 하 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u>다.</u> ④ (생 략)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 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 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제9조(예산 계상) ① (생 략)
 -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u>내국</u> 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u>내국세나 교육세가</u>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 ③ <u>내국세 및 교육세의</u>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④ (현행과 같음) 4조(교부율의 보정) ①
제	② (현행과 같음) 9조(예산 계상) ① (현행과 같
	음) ② <u>내국</u>
	<u>세의</u>
	<u>내국세가</u>
	③ <u>내국세의</u>